

산업을 가로막는 진흥법: 'AI 기본법'의 역설

디지털 산업 측면에서 바라본 AI 기본법

노재인 연구위원(jinoh@kinternet.org)

이동근 책임연구원(dgun@kinternet.org)

요약

- ▶ 2024년 12월 26일 국내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AI 사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본법의 취지와 다르게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 세계 각국은 신형 패권 경쟁의 핵심 부문인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산업 각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음
- ▶ 한국은 AI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며,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으로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 향후 산업계 및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함

서론

- ▶ 지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었음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개 법안이 병합된 대안 법안으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사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함
 - 해당 법은 AI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안전·신뢰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그러나 국내 AI 산업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EU의 규제를 단순히 모방한 성급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AI 기본법은 EU의 'AI Act'를 모방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회원국과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회원국 및 자국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AI Act와 다르게 한국은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AI 산업 및 시장 현실에 대한 논의와 분석 없이 빠르게 추진됨
 -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AI 산업을 견인해야 하는 기본법의 성격과 다르게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 본 글에서는 국내외 AI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살피고, 디지털산업 측면에서 한국 AI 기본법 제정이 갖는 한계를 논의하고자 함

AI 산업 생태계

- ▶ AI 기술은 향후 전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디지털 패권 경쟁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중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인공지능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촉진적 기술(enabling technology)'로 정의됨(Horowitz, 2018).
 -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국가 역량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 각국은 AI 거버넌스 논의의 의제 설정 권한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Bradford, et, al., 2023)
- ▶ AI 기술이 기반 기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의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인공지능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앱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각자 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와 제휴를 통해 생성형 AI 가치사슬 통합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하드웨어) 인공지능 데이터의 수집, 저장, 학습, 훈련을 지원하며 AI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 기술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NVIDIA)가 점유하고 있음
 - (플랫폼) 독점 API, 또는 오픈소스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를 적절한 결과물로 생성하는 AI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로,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Gemini, 메타의 LLaMa 등이 해당함
 - (앱서비스) AI 모델을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AI 에이전트 비서나 챗봇과 같은 소비자 지향 솔루션, 제조 장비 예측 보수나 이상 거래 탐지 등 산업 분야 적용 등

- ▶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각국에서 자국 AI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AI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들고 있어 비용 경쟁이 되고 있음.
 - 오픈AI의 GPT-4를 훈련하는 비용은 약 7,800만 달러, 구글의 Gemini 훈련 비용은 1억 3,000만 달러로 추산됨(EPOCH AI, 2024)
 - 개발 비용에서 하드웨어의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hatGPT의 경우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용 GPU가 1만 개 이상 탑재되어 있어, 그 비용이 약 3억 달러로 추산됨(머니투데이, 2023.04.09.)
 -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하는 비용은 지난 8년 동안 매년 2~3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안에 대규모 모델의 개발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EPOCH AI, 2024)

글로벌 AI 정책 동향

미국

- ▶ 미국은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토대로 막대한 비용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여 AI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AI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Open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미국 기업에 속함
 - 2023년 기준, 세계 민간 AI 투자의 62%를 미국이 차지,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을 합하면 874억 1,000만 달러에 달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 ▶ 미국은 제도 마련을 통해 AI 가치사슬 전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11월 트럼프의 당선 이후 AI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측됨
 - 2022년 제정된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세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미국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의 글로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로 해석됨
 - 2023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AI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마련했지만,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AI 행정명령 폐지와 AI 산업 규제가 예상되고 있음(ZDNET Korea, 2024.11.07.)

중국

- ▶ 중국은 자국 AI 기업의 기술력을 토대로 정부의 조정과 시장기반 혁신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의 AI 생태계를 구현함
 -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화웨이, 바이트댄스, 텐센트, 샤오미 등 세계 100대 인공지능 기업에 포함되는 기술 선도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심하윤, 2024)
 - 2017년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AI 기술 혁신을 추진, 데이터센터 건립과 동시에 AI 관련 조직을 설립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승주, 2024)
 - 중국은 향후 10조 위안 이상을 인공지능에 투자할 가능성을 내비침(AI TIMES, 2024.09.10.)

- ▶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나, 자국 AI 발전을 위해 제도적 제한을 높임
 - 2023년 AI 기술에 대한 차등 관리 원칙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이 공포되었으나, 이는 기술 발전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규제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접근으로 자국 AI 기술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한 포용적 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을 의미함(법률신문, 2024.06.10.)

프랑스

- ▶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자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대대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AI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I)'을 수립하고 5년간 15억 유로를 투자하며 AI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함(최윤정, 2024)
 - 이를 통해 프랑스는 미스트랄AI(Mistral AI)와 같은 자국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구글, 메타, 허깅스페이스 등 선도적인 국제 AI 연구센터 및 의사결정센터 등을 유치하였음(문화체육관광부, 2024)
 - 2024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France 2030)'의 투자 기금 중 25억 유로를 AI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현재도 AI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음.
- ▶ 프랑스는 EU의 AI Act 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AI Act가 자국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반영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에 동의함
 - AI Act는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으며(심소연, 2024), Chat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와 관련된 규정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수정됨
 - 프랑스는 자국 AI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고, 해당 법이 자국 기업 발전 및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당 법안을 적극 반대하였으며, EU는 AI Act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적용 방식과 활용 사례를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음

일본

- ▶ 일본은 AI 산업에 대한 연성규제 적용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AI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일본은 AI와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요구하는 방식의 연성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설립,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정성춘, 2024.05.02.)
 - 그 결과,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거점으로 일본을 선택하고 있으며(뉴시스, 2024.01.20.), 사카나 AI와 같은 자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한국의 AI 산업 현황

- ▶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AI 생태계를 형성하며 빅테크를 추격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 한계와 정책적 지원의 부재 등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2023년까지 국내 초거대 AI 모델 개발 기업 중 AI 생태계를 형성하며 글로벌 빅테크를 추격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매년 2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매출의 20~2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AI TIMES, 2024.05.04.)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과 투자 비용을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
 - AI 반도체는 퓨리오사 AI, 라벨리온, 삼성전자 등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는 아님
 - 정부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지만, 미국 투자액의 7분의 1 수준(18조 8967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AI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었던 'AI위원회'는 2025년 운영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노컷뉴스, 2024.12.29.)

- ▶ **한국의 AI 정책은 실효성 낮은 전략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도입된 규제, 부처별 개별 규제가 결합되어 AI 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주요 내용 및 지원 방향이 분산적이고, 서비스 이용자, 소규모 기업, 정부 업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AI 산업의 핵심이나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거대 AI 모델 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 정부가 AI 산업을 대하는 방식은 EU의 규제 방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 내 각국의 논의를 거쳐 오랜 기간 합의 과정을 도출했던 AI Act와 달리, 한국은 신속한 규제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규제를 추진함
 - 정부의 각 부처도 데이터, 생성물,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AI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및 정책 이외에도, 현행법령상 인공지능이라는 문언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모빌리티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23개(2024년 6월 25일 기준, 직제 제외)로 확인됨(법제처, 2024)

표 1. 각 부처별 AI 관련 규제 추진 현황

담당부서	AI 관련 규제 추진 내용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2022) - '디지털 신질서 정립방안' 발표(2023.0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 (2024.03)	AI 산업 전반
방송통신위원회	- AI 서비스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24.07) -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024.07)	AI 생성물
문화체육관광부	-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2023.08) - 인공지능(AI)-저작권 안내서 발표(2023.12) - AI-저작권 제도개선 2차 워킹그룹(2024.02~)	학습데이터 및 AI 생성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배포(07.17)	개인정보

* 2024년 4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 법무부와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행위 등에 대해 국제 공조를 합의 했고, 향후 공정위도 AI 산업 관련 규제 당국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노재인. (2024).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 p.11.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우려

▶ | 규제 모호성으로 규제 적용 여부 판단의 어려움 |

-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영향 AI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제한함 (안 제2조 제4호)
- **(데이터 품질 및 공정성 기준 부족)**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을 촉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용 가능한 데이터의 기준, 데이터 편향 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 미비함 (안 제15조)
- **(윤리적 기준과 실천 방안)** 윤리 원칙은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 기준이나 절차가 부재 (안 제27조 및 제28조)
- **(투명성 확보 의무와 범위)**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가 적용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인공지능 활용의 유연성이 제한됨(안 제31조)

▶ | 기술 혁신 저해 가능성 |

-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 규정)**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위험 평가, 인증,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며, 기술 개발과 시장 출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기술 변화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적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됨 (안 제30조~제35조)
-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부담 증가)** 고영향 AI와 관련한 규제 준수, 인증 비용, 기술적 요구사항은 중소 규모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규제 충족을 위한 자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안 제33조~제35조)

▶ | 정부의 과도한 규제 권한 부여와 체계적 지원 설계 부족 |

- **(정부의 과도한 규제 권한)** 다른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쉬운 조사 실시 요건(단순 민원)으로 정부에 과도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사업자에 막대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안 제40조)
- **(정부의 체계적 지원 설계 부족)** 규제 의무가 포괄적인 반면, 지원 사항은 협소하고 파편적으로 제시되어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며, AI 기술기업, 특히 신생 기업들이 규제 준수와 동시에 기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음 (안 제16조~제22조)

▶ |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

- **(정부 중심의 표준화 주도)**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 기준이 미비하고, 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정부의 국제 협력 방식이 기업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안 제14조)
- **(이중 규제 부담)** 제14조 제4항을 통해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규제 체계와의 연계성이 낮아 기업이 이중 규제를 부담하거나 국제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음 (안 제14조)
- **(규제 격차)** 국내 제도가 EU AI Act를 모방한 형태의 규제 위주로 설계된 반면,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비교적 자율적인 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어 국가 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음

제언

- ▶ 우리나라 AI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국내 기업 및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함
 - AI 기본법에 제시된 규정 중 많은 조항이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의 제정이 매우 중요함
 - 하위 법령의 제정 시,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국내 AI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AI 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함

- ▶ 국회는 AI 산업 발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조항에 대한 신속한 개정 검토가 필요
 - 업계에서는 이미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승리고 패권 전쟁은 끝났다고 평가하며 진흥을 위한 큰 투자가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 및 소버린 AI 강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노컷뉴스, 2024.12.29.)
 - 따라서, 기업 및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을 선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AI 패권 경쟁의 현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전략적으로 구상해야 함, 이러한 방안들이 AI 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이나 UAE 사례와 같이, 현 시점에서 자국 AI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AI 기업들의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AI 패권 경쟁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I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AI 기업 및 인재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는 혜택 제공이 필요

참고문헌

- 노재인. (2024).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 KISDI AI Outlook, 2024년 Vol.19.
- 노컷뉴스. (2024.12.29.). 'AI 전쟁' 더 뜨거워지는데...韓 '선장 부재'에 앞길 안갯속.
<https://www.nocutnews.co.kr/news/6268572>
- 뉴시스. (2024.01.20.). 아마존, 일본에 20조원 투자...“AI 보금으로 데이터량 급증”.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19_0002598483
- 동아일보. (2024.01.28.). 세계 3위 AI 강국 노리는 UAE...중동판 오픈AI 만들며 투자.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126/123252366/1>
- 머니투데이. (2023.04.09.). “챗 GPT 때문에 엔비디아 지배력이 무너진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714110852397>
- 문화체육관광부. (2024). 프랑스 문화부, '프랑스 2030 투자기금' 등 AI 지원계획 발표.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303000000.do?schopt5=continent&schM=view&page=1&viewCount=9&id=48507&schBdcode=&schGroupCode=#>
- 법률신문. (2024.06.10.). 중국의 AI 관련 법률 규제 현황.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8930>
- 법제처. (2024).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의 법제 동향. 법제소식 7월호, 28-45.
- 심소연. (2024).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04호(통권 제242호), 국회도서관
- 심하윤. (2024). [중국의 주요 산업 현황 및 협력 방안] AI 산업 편.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이슈&연구
- 아주경제. (2024.05.02). [정성춘 칼럼] 일본의 AI전략을 주목해야 할 이유 셋.
<https://www.ajunews.com/view/20240501082859010>
- 이승주. (2024). [AI와 신문명 표준] 경제도전①: 미중 인공지능 생태계 디커플링. EAI 스펙셜리포트.,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708&board=kor_special
- 최윤정. (2024). 최윤정의 사람을 위한 기술 이야기<2> Sovereign AI: AI 주권을 위한 국가 전략. ifs POST.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507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미국 인공지능(AI) 정책·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 AI 지배력 강화와 초강대국 유지를 위해 미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The AI Report 2024-3.
- AI타임즈. (2024.05.04.). 네이버 “AI 장비에 연간 7000억 이상 투자”.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369>
- AI타임즈. (2024.09.10.). “중국, AI에 6년 동안 1900조 이상 투자할 수 있어”.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289>
- ZDNET Korea. (2024.11.07.). 돌아온 트럼프, 美 빅테크만 웃는다 ...글로벌 AI 시장 찬바람 예고,
<https://zdnet.co.kr/view/?no=20241107172053>

- Dennis Breoeders, Fabio Cristiano and Monica Kaminska (2023). In Search of Digital Sovereignty and Strategic Autonomy: Normative Power Europe to the Test of Its Geopolitical Ambitions. *Journal Common Market Studies*, 61(5) 1261-1280.
- EPOCH,(2024). <https://epoch.ai>
- Horowitz, M. (2018).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balance of power. *Texas National Security Review*, 1(3):36–57.

부록: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표. AI 기본법 주요 내용 정리

구분	세부내용		조항
추진체계 마련	AI 기본계획 수립	-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 및 시행	제6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 대통령 소속으로 주요 정책 및 규제 심의·의결	제7조, 제8조
	정책 전문기구 운영	-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제11조, 제12조
산업 육성 지원	R&D 및 기술 지원	- 기초 및 응용 AI 기술 개발 촉진	제19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 학습용 데이터 통합 제공 시스템, 데이터 센터 설립 지원	제15조, 제25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 금융, 컨설팅, 창업환경 조성	제16조-제18조
	산업 간 융합 촉진	-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AI 기술 융합 지원	제19조
안전 및 신뢰 조성	AI 윤리 원칙 확립	-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을 포함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제27조, 제28조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결과물의 고지 의무 부과	제31조, 제32조
	고영향 AI 관리	- 위험 관리, 안전성 평가, 영향평가 의무화	제33조-제35조
	검증/인증 제도 도입	- AI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인증 기준 마련	제30조
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AI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인재 유치 등	제21조
	국제 협력	- 글로벌 AI 표준화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협력 강화	제14조, 제22조
위반시 조치	사실조사	-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제40조
	과태료	- 고지 및 명령 미이행, 국내 대리인 미지정	제43조